

이달의 초점

청년의 복합 위기와 기본사회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

| 박윤경 |

청년 건강 현황과 과제: 취약청년 중심으로

| 김동진·이지영 |

청년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과제

| 나원희 |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2022~2026)

| 함선유 |

청년의 고립·은둔 현황과 과제

| 노혜진 |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

|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청년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과제¹⁾

Current Status of Youth Debt and Policy Tasks for Debt Adjustment Programs in Korea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은 19~34세 청년의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한 것이다. 청년의 부채는 학자금·주거비·생활비 등 생애이행기의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모보다 저신용·다중 채무·중기연체가 중첩된 구조적 취약성에 특징이 있다. 청년의 장기연체 증가폭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부채 문제가 취업 지연 및 소득 불안정과 맞물려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부채 감소, 우울 완화, 대인·가족관계 개선 등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나, 신규 취업·소득 등 객관적 고용지표의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진입장벽과 복잡한 절차, 지역 간 운용 편차, 사후관리의 미흡이 실효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진입 이전 단계의 종합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강화와 성과지표 재정비를 통해 제도 인프라를 정비할 것을 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1 들어가며

김태완 외(2023)는 현세대 청년이 고도 경제성장에 청년기를 보낸 기성세대와 달리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청년

세대를 설명하는 사회적 담론은 양가적이어서 한편으로는 자기주도적이고 소비문화에 민감한 세대로 묘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좌절과 불안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중성은 2020년대 중반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올로(YOLO)’로

1) 이 글은 나원희, 오윤해, 노혜진, 박진백, 황안나. (2025).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대표되던 소비 지향 담론은 고물가·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요노(YONO: You Only Need One)’와 ‘무지출 챌린지’ 등 방어적 절약의 언어로 대체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직을 단념한 채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 2026년 1월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약 46만 9000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6). 이는 오늘의 청년세대가 과거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은 미래 사회와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해야 할 세대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년의 취약성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고용 불안, 주거 빈곤, 과중한 부채, 관계 자본의 결핍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난다(김성아 외, 2023a). 특히 금융취약청년의 경우 부채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 상호작용하며 생애이행 과정에 구조적 제약을 초래한다.

청년의 부채 문제는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년의 부채는 학업, 주거, 취업 준비 등 생애이행기에 발생하는 자금 수요를 배경으로 하는데, 취업 지연과 불안정 노동, 낮은 초기 소득과 결합될 경우 장기연체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연시키고 결혼·출산 등 후속 생애과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금융 문제를 넘어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청년의 금융취약성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순한 부채 경감이나 일시적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경제적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회복시키는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을 지향하는 최근의 사회정책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이때 채무조정제도는 청년이 과중한 부채에서 벗어나 교육·훈련·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재통합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재조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채무조정제도의 효과는 주로 단기적 재정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경제활동 역량 회복과 사회통합, 생애 전환 지원 등 중장기적 사회투자 효과는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청년 부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채무조정제도 이용의 효과와 제도적 한계를 검토한 뒤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분석 대상인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로 한다. 연령대 간 비교가 필요한 경우 20대(19~29세), 30대(30~39세), 40대 이상을 함께 제시한다. 분석은 KoDATA 신용평가데이터(2020~2025년), 채무조정 이용·비이용 청년 대상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을 종합한 것이다.

2 청년의 대출 현황과 특성

가. 금융취약청년의 개념과 특성

최근 주목되는 현상은 다중채무자·연체자 등 금

융취약계층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10명 중 약 3명이 20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상징되는 자산시장 참여가 자리한다(곽윤경 외, 2022). 이는 단순한 투기적 행태라기보다 구조적 소득불평등과 자산 격차에 대한 청년세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10점 만점(매우 심하다)에 평균 6.82점, 소득 대물림 정도를 7.23점으로 인식하여 부모 세대의 소득이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였다(정세정 외, 2025). 이

러한 불평등 인식 속에서 청년층은 기회 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무리한 금융 레버리지를 감수하기도 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자산 가치 하락과 부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여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김태완, 한수진, 2023).

금융취약성은 기존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그 개념이 다차원적이어서 단일 기준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상환 능력 대비 채무 과중, 연체·체납 경험, 다중채무 보유, 채무조정 등 정책적 지원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취약성을 식별한다. 이 글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을 구분한다는 목적에 맞추어 기존 연구의 개념과 지표를 중

[표 1] 금융취약성 정의

구분	조작적 정의	활용 지표	기존 연구
① 채무 과중	상환 능력에 비해 채무가 과중한 경우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 (예: 30~50% 이상)	Betti, Dourmashkin, Rossi & Yin(2007), d'Alessio와 Iezzi(2013)
② 연체·체납	일정 기간 이상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연체 일수·건수 (예: 2건 이상 연체)	Betti, Dourmashkin, Rossi & Yin(2007), d'Alessio와 Iezzi(2013), Disney et al.(2008), Eurofound(2020)
③ 다중채무	저소득·저신용이면서 3건 이상 채무 보유	소득·신용점수·채무 건수 (3건 이상)	한국은행(2021)
④ 정책 지원 대상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이용	채무조정제도 이용 여부	노혜진 외(2022), 백아름 외(2022), 신규수(2019), 탁장한·박정민(2017)
본 연구	1) 소득 4인 가족 중위 50%로 월평균 기준 300만 원 이하 2) 일정 기간 이상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연체 일수 30일 이상 3)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차주	소득수준 하위 30%, 연체 일수 및 다중채무 보유 여부	-

출처: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김성아 외, 2023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3~1;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 p. 105.

합하여 소득 기준(세후 월소득 300만 원 이하), 연체 일수 30일 이상, 채무 2건 이상 보유를 모두 충족하는 차주를 금융취약청년으로 정의하였다.²⁾

그러나 금융취약성을 저소득·저신용·채무 관련 집단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김성아 외(2023b)는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개인이 경험하는 취약성의 유형이 어떻게 중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인적 속성, 관계 특성, 일자리 특성, 경제적 수준의 네 영역에 걸쳐 15개 취약성 유형을 설정하고, 한 청년에게 몇 개의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가지 취약성을 경험하는 청년이 31.1%, 두 가지가 11.4%, 세 가지가 3.1%로 유형 수가 늘수록 비율은 낮아지만, 두 가지 이상이 중첩된 복합 취약 청년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김성아 외, 2023b). 특히 15개 유형 가운데 다섯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집단에서는 활동제약청년(75.5%), 비자발적실업청년(52.9%), 구직단념청년(52.1%), 과채무부담청년(50.0%)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채무부담청년이 단순히 부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아니라 실업, 불안정 고용,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취약 요인과 밀접하게 결합한 다차원적 위

험 집단임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환 압박과 신용 악화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지연되거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한정되어 경제적 회복력이 제약되기 쉽다. 이는 다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져 생애이행 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취약 청년은 전통적 빈곤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군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 청년의 대출 규모와 구성

청년의 부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평가데이터(KoDATA)³⁾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를 구매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단위의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취합된 대규모 데이터를 포함한다. KoDATA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한 결과 전 연령을 합산한 기준으로 약 80% 이상의 대표성을 보인다.

2024년 12월 기준 청년(19~34세)의 대출 보유 비율은 55.5%로 절반 이상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2월 이후 5년간 대출 보유 비율의

2) 저소득의 기준을 세후 월소득 300만 원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5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인 304만 8000원, 즉 4인 가족 월소득 중위값(609만 7773원)의 하위 50%와 유사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4). 한편 이 글에서는 한국은행(2021)이 다중채무자를 3건 이상 보유자라고 정의한 것과 달리 2건 이상 보유자로 설정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아직 신용도, 자산, 소득수준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장기연체의 기준으로 30일을 설정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 자격이 30일 이상 연체이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체 일수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3) KoDATA는 국책기관 및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국내 최대 기업DB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평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04년 9월 중소기업 전문 CB 설립위원회 구성 이후 2007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4년 금융위원회 지정 민간 최초 기술신용평가(TCB) 기관 선정 등을 거쳐 2020년 개인CB, 개인사업자CB 업무를 시작하였다. 현재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의 신용정보 구축·관리 기관이다(한국신용평가데이터. (n.d). KoDATA 홍보관. <http://www.kodata.co.kr/cr/CRPRS03R0.do>)

[표 2] 대출 보유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대 (19~29세)	30대 (30~39세)	청년 (19~34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60세 이상)
2020. 12.	2,309,304 (54.9)	3,900,975 (62.4)	4,033,250 (57.2)	4,853,490 (65.1)	4,638,039 (62.1)	3,804,898 (46.3)
2021. 12.	2,354,851 (55.9)	3,920,519 (63.5)	4,177,706 (58.5)	4,827,440 (65.0)	4,680,729 (61.7)	4,007,153 (45.1)
2022. 12.	2,306,007 (54.6)	3,835,708 (62.5)	4,176,474 (57.4)	4,754,499 (64.0)	4,647,233 (60.5)	4,142,238 (43.4)
2023. 12.	2,283,747 (53.8)	3,789,603 (61.6)	4,188,192 (56.6)	4,665,412 (63.4)	4,692,248 (59.8)	4,298,359 (42.6)
2024. 12.	2,172,718 (52.5)	3,781,040 (60.7)	4,096,660 (55.5)	4,553,359 (63.1)	4,699,501 (59.4)	4,462,925 (41.8)
2025. 6.	1,970,087 (52.8)	3,769,840 (60.1)	3,893,593 (55.5)	4,489,279 (63.0)	4,703,078 (59.5)	4,743,350 (41.7)
5년간 대출 증감	△2.1%P	△2.3%P	△1.7%P	△2.0%P	△2.6%P	△4.6%P

주: ()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6~57.

[표 3] 대출 보유 건수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20대 (19~29세)	30대 (30~39세)	청년 (19~34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60세 이상)
1개	876,594 (40.3)	1,571,299 (41.6)	1,685,073 (41.1)	1,714,808 (37.7)	1,879,611 (40.0)	2,332,359 (52.3)
2개	387,088 (17.8)	795,162 (21.0)	767,814 (18.7)	1,039,364 (22.8)	1,060,072 (22.6)	949,134 (21.3)
3개	226,371 (10.4)	440,607 (11.7)	435,007 (10.6)	624,010 (13.7)	623,879 (13.3)	465,385 (10.4)
4개	164,118 (7.6)	270,965 (7.2)	296,138 (7.2)	382,834 (8.4)	381,639 (8.1)	259,223 (5.8)
5개	112,244 (5.2)	178,626 (4.7)	202,218 (4.9)	243,970 (5.4)	242,355 (5.2)	155,408 (3.5)
6개	87,174 (4.0)	125,239 (3.3)	152,777 (3.7)	161,642 (3.5)	157,593 (3.4)	97,508 (2.2)
7개 이상	319,129 (14.7)	399,142 (10.6)	557,633 (13.6)	386,731 (8.5)	354,352 (7.5)	203,908 (4.6)

주: 1. () 안은 대출 보유 인구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2: 연령대별 대출 보유 건수의 상위 3개 항목(1~3순위)은 주황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함.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8.

감소폭도 1.7%포인트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작았다. 이는 최근 5년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청년층은 대출 보유 비율의 감소폭이 가장 작았음을 의미하며, 청년층의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출의 보유 건수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대출을 1건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60대 이상은 52.3%, 30대는 41.6%가 1건의 대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1건 보유가 41.1%, 2건이 18.7%이며, 7건 이상의 다중

대출 비율은 청년이 13.6%로, 40대(8.5%), 50대(7.5%)의 약 1.6~1.8배, 60대 이상(4.6%)의 약 3배에 달한다.

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청년은 신용대출(41.9%), 학자금대출(29.3%), 지급보증담보대출(24.9%), 전세자금대출(18.8%)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학자금대출(39.0%)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학업, 사회 진입 초기의 생활자금, 주거 마련 등 생애이행기의 자금 수요가 청년 부채의 주된 배경임을 시사한다.

[표 4] 대출 종류별 대출 여부 현황 순위(2024년 12월 기준)

구 분	20대 (19~29세)	30대 (30~39세)	청년 (19~34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60세 이상)
1순위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39.0%	(신용대출) 신용대출 50.2%	(신용대출) 신용대출 41.9%	(신용대출) 신용대출 57.6%	(신용대출) 신용대출 55.7%	(신용대출) 신용대출 46.5%
2순위	(신용대출) 신용대출 37.2%	(담보대출) 지급보증 (보증서) 담보대출 21.6%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29.3%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32.1%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33.7%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34.3%
3순위	(담보대출) 지급보증 (보증서) 담보대출 26.9%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21.3%	(담보대출) 지급보증 (보증서) 담보대출 24.9%	카드론 19.1%	카드론 22.5%	카드론 20.5%
4순위	(담보대출)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대출 15.3%	(담보대출)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대출 19.1%	(담보대출)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대출 18.8%	(담보대출) 지급보증 (보증서) 담보대출 17.2%	(담보대출) 지급보증 (보증서) 담보대출 11.3%	(담보대출)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 담보대출 12.1%
5순위	카드론 7.8%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13.2%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9.6%	(담보대출) 전세자금 (보증서, 질권 등) 대출 8.2%	(할부금융) 신차 할부금융 9.8%	(할부금융) 신차 할부금융 7.0%

주: () 안은 대출 보유 인구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3.

다. 저신용, 다중채무, 중기연체 집중

청년 대출의 취약성은 규모보다 구조에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총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 21.7%, '1000~3000만 원 미만'이 21.8%로 소액 구간에 집중되어 대출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49.8%(20대는 60.7%)는 신용평점 7등급(829점 이하) 이하의 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40대 이상에서 같은 비중이 35~37% 수준인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연체 구조에서도 연령대별 차이가 확인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청년은 2020년 12월 1.8%에서 2025년 6월 2.3%로 증가하여 5년간 장기연체 증가폭(0.51%포인트)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또한 청년 연체의 45.8%가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집중되어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 중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사회 진입기의 소득

[표 5] 금액대별 대출 보유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20대 (19~29세)	30대 (30~39세)	청년 (19~34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60세 이상)
500만 원 미만	665,401 (30.6)	387,225 (10.2)	889,875 (21.7)	353,337 (7.8)	403,148 (8.6)	496,194 (11.1)
500만~1000만 원 미만	352,488 (16.2)	259,153 (6.9)	505,350 (12.3)	243,127 (5.3)	306,598 (6.5)	399,005 (8.9)
1000만~3000만 원 미만	519,156 (23.9)	673,337 (17.8)	893,172 (21.8)	771,820 (17.0)	968,060 (20.6)	1,163,280 (26.1)
3000만~5000만 원 미만	179,043 (8.2)	414,647 (11.0)	393,776 (9.6)	548,225 (12.0)	621,723 (13.2)	581,565 (13.0)
5000만~1억 원 미만	202,826 (9.3)	631,928 (16.7)	520,647 (12.7)	851,215 (18.7)	910,273 (19.4)	739,683 (16.6)
1억~3억 원 미만	230,338 (10.6)	1,083,744 (28.7)	745,818 (18.2)	1,337,884 (29.4)	1,163,894 (24.8)	822,964 (18.4)
3억~5억원 미만	20,761 (1.0)	272,180 (7.2)	127,112 (3.1)	339,110 (7.4)	233,262 (5.0)	159,898 (3.6)
5억 원 이상	2,705 (0.1)	58,826 (1.6)	20,910 (0.5)	108,641 (2.4)	92,543 (2.0)	100,336 (2.2)
대출액 합계(조 원)	81	423	265	579	537	536

주: 1. () 안은 대출 보유 인구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2. 연령대별 대출 보유 건수의 상위 2개 항목(1~2순위)은 주황색으로 강조하여 표기함.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9.

[표 6] 고위험 대출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대 (19~29세)	30대 (30~39세)	청년 (19~34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60세 이상)
2020. 12.	1,342,148 (58.1)	1,438,325 (36.9)	1,987,989 (49.3)	1,895,092 (39.0)	1,780,943 (38.4)	1,448,679 (38.1)
2021. 12.	1,349,297 (57.3)	1,396,246 (35.6)	2,009,933 (48.1)	1,823,125 (37.8)	1,745,002 (37.3)	1,456,659 (36.4)
2022. 12.	1,330,802 (57.7)	1,346,006 (35.1)	2,004,136 (48.0)	1,759,285 (37.0)	1,704,877 (36.7)	1,461,132 (35.3)
2023. 12.	1,356,366 (59.4)	1,347,832 (35.6)	2,056,510 (49.1)	1,738,032 (37.3)	1,757,624 (37.5)	1,533,229 (35.7)
2024. 12.	1,317,996 (60.7)	1,357,689 (35.9)	2,038,140 (49.8)	1,694,117 (37.2)	1,776,739 (37.8)	1,599,482 (35.8)

주: () 안은 대출 보유 인구 전체 중 해당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7.

[표 7] 장기연체 현황(90일 이상)

(단위: 명, %)

구 분	20대 (19~29세)	30대 (30~39세)	청년 (19~34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60세 이상)
2020. 12.	70,646 (1.7)	141,269 (2.3)	127,315 (1.8)	214,012 (2.9)	204,166 (2.7)	138,913 (1.7)
2021. 12.	67,254 (1.6)	121,506 (2.0)	119,041 (1.7)	186,309 (2.5)	185,587 (2.4)	136,264 (1.5)
2022. 12.	71,192 (1.7)	115,368 (1.9)	124,954 (1.7)	173,188 (2.3)	174,591 (2.3)	137,274 (1.4)
2023. 12.	83,076 (2.0)	132,607 (2.2)	148,311 (2.0)	190,635 (2.6)	192,027 (2.4)	154,471 (1.5)
2024. 12.	88,639 (2.1)	150,888 (2.4)	165,459 (2.2)	209,082 (2.9)	215,052 (2.7)	179,635 (1.7)
2025. 6.	81,145 (2.2)	157,616 (2.5)	162,717 (2.3)	215,581 (3.0)	227,415 (2.9)	203,923 (1.8)
5년간 연체증가율	0.49%P	0.25%P	0.51%P	0.16%P	0.14%P	0.10%P

주: () 안은 신용정보 보유자 전체 중 해당 대상자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3.

[표 8] 연체 기간별 장기연체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20대 (19~29세)	30대 (30~39세)	청년 (19~34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대 이상 (60세 이상)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88,639 (100.0)	150,888 (100.0)	165,459 (100.0)	209,082 (100.0)	215,052 (100.0)	179,635 (100.0)
90일 이상 180일 미만	10,478 (11.8)	13,826 (9.2)	17,779 (10.7)	17,209 (8.2)	16,651 (7.7)	13,236 (7.4)
180일 이상 1년 미만	15,574 (17.6)	23,198 (15.4)	27,532 (16.6)	30,341 (14.5)	29,592 (13.8)	24,127 (13.4)
1년 이상 3년 미만	41,718 (47.1)	65,415 (43.4)	75,827 (45.8)	82,661 (39.5)	79,076 (36.8)	61,864 (34.4)
3년 이상 5년 미만	15,141 (17.1)	26,941 (17.9)	29,160 (17.6)	35,806 (17.1)	37,873 (17.6)	32,374 (18.0)
5년 이상	5,728 (6.5)	21,508 (14.3)	15,161 (9.2)	43,065 (20.6)	51,860 (24.1)	48,034 (26.7)

주: () 안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중 기간별 대상자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4.

불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방치될 경우 채무불이행 등록(청년 2020년 0.2%→2024년 0.4%)⁴⁾과 금융·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3 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와 효과

가. 채무조정제도의 개요와 청년 특례

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으로 구분된다. 사적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0일 이하의 신속채무조정이 적용된다.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를 이행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며, 사적채무조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공적채무조정제도와 사적채무조정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명확한 차이는 대상 채무자와 대상 채권과 변제기간, 채무감면 정도이

4) 채무불이행 등록은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공식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비율은 대출 보유자 중 채무불이행자 비율이다. 나원희 외, (2025).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0, <표 3-23>.

[표 9]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공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소득활동이 어렵고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액이 과도하여 상황이 불가능한 자	고정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액이 과도하여 상황이 불가능한 자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	연체기간 31~89일인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
채무액	제한 없음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채무감면	재산 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 (원금감면 100%)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상환기간	-	최장 3~5년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최장 10년
상환유예	-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공공정보 등재기간	면책결정 후 5년 경과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해제	완제 또는 1년 경과시 해제	미등재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190)(검색일: 2026.10.1.)

[표 10] 청년 채무조정 주요 내용

구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청년 특례	개인워크아웃 청년 특례
분할상환	- 최장 10년 원리금 분할상환	- 최장 10년 원금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 70% 인하	- 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 (연체가산이자) 전액 감면 * 원금·정상이자 감면은 없음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미상각채권원금) 0~30% 감면 - (상각채권원금) 70% 감면
상환 전 유예	- 최장 3년 상환유예	- (대학생) 재학 기간 및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 (미취업 청년) 취업 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 상환 유예기간 이자 납입(연 2%)	- 상환 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신청비	- 면제	- 면제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3.

다. 첫째, 이용 대상을 보면 사적채무조정제도에서는 연체 기간을 중심으로 구분하나, 공적채무조정 제도에서는 상환 가능성과 고정소득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한다. 둘째, 기간을 보면 공적채무조정제도는 상대적으로 변제기간이 짧고 사적채무조정제도는 10년 이내로 길다. 셋째, 채무감면 정도는 개인 파산이 잔여 채무 전액 면책, 개인회생이 원금 평균 70% 감면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평균 41% 감면에 그치고, 사전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율만 조정한다(신용회복위원회, n.d.).

제도는 청년을 위한 특례도 두고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 19~34세 대학생·미취업 청년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대학생 최장 4년, 미취업 청년 최장 5년까지 부여하고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며, 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신청비를 면제한다. 개인회생 이용도 청년층에 집중되어 서울회생법원의 2024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중 39세 이하의 비중이 41.8%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2025b, p. 4). 청년 채무조정 특례는 일반인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자율 감면폭 확대, 상각채권원금 감면 범위 상향, 상환 유예기간의 대폭 연장, 유예이자 및 신청비 면제와 같은 차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나. 채무조정제도 이용 효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2025년 9월 15일~10월 10일 ‘채무조정제도 이용 경험 및 금융생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설문 웹페이지 링크를 전달하고 응답 시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금융취약 청년과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청년동행센터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홈페이지 배너와 문자 발송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008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19~34세 청년 400명(39.7%), 35~49세의 중년 이용자 200명(19.8%), 50~59세의 장년 이용자 165명(16.4%), 미이용 청년 243명(24.1%)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OLS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계수를 보고하였고, 0과 1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인 경우 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로짓모형의 결과는 추정계수의 함수인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델타방법(Delta method)으로 근사 추정한 값을 보고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표로 McFadden의 pseudo R^2 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 11>은 네 개 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모형 (1)~(3)은 제도 미이용 청년을 비교집

[표 11] 채무조정제도 이용 효과의 추정치 비교

(단위: %)

성과	지표	추정 방법	제도 미이용 청년과의 비교 모형			(4) 증장년 제도 이용자와 비교 모형
			(1) 기본 모형	(2) 통제 변수 추가	(3) '23년 신청 제외	
부채 감소	총대출 감소율	OLS	0.154 **	0.158 **	0.166 **	0.098
	신용대출 감소율		0.388 *	0.450 **	0.383	0.464 *
	총대출 감소 여부	Logit	0.163 ***	0.144 ***	0.172 ***	0.060
	신용대출 감소 여부		0.109 ***	0.105 ***	0.115 ***	0.090 **
소득 증가· 소비 감소	월소득 증가율	OLS	0.142	0.242	0.105	-0.036
	소비 비중 감소량		0.266 **	0.287 **	0.248 **	0.161 *
	소득 증가 여부	Logit	-0.053	-0.026	-0.049	0.080 *
	소비 비중 감소 여부		0.036	0.045	0.032	0.122 ***
고용·노동 개선	신규 취업 여부	Logit	-0.005	0.014	0.000	0.051 *
	승진 여부		0.008	0.024	0.007	0.048 *
	고용 개선 여부		-0.003	0.039	-0.001	0.097 ***
	노동시간 증가 여부		0.029	0.045	0.044	-0.037
	노동의지 증가 여부		0.106 **	0.100 **	0.126 ***	-0.013
심리·건강 증진	우울 점수 감소량	OLS	0.784 **	0.594	0.914 **	0.489
	극단충동 감소량		0.146 **	0.133 *	0.194 ***	0.124 *
	우울 감소 여부	Logit	0.127 ***	0.095 **	0.125 ***	0.100 **
	극단충동 감소 여부		0.109 ***	0.098 **	0.118 ***	0.059
	건강상태 개선 여부		0.114 ***	0.118 ***	0.106 ***	0.023
가족 사회 안정	대인관계 개선 여부	Logit	0.151 ***	0.171 ***	0.167 ***	0.094 **
	가족관계 개선 여부		0.087 **	0.089 **	0.091 **	0.068
	결혼의지 개선 여부		0.060	0.088 *	0.039	0.101 *
	출산의향 개선 여부		0.027	0.032	0.018	0.007

주: 모형 (1)은 기본 모형임. 모형 (2)는 대부업신용대출 보유 여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보유 여부, 학자금대출 보유 여부, 햇살론 보유 여부, 수도권·더미, 정규직·비정규직·임시직·자영업 여부의 다양한 통제변수를 추가함. 모형(3)은 2023년에 제도를 신청한 이용자를 제외한 표본에서의 추정 결과임. 모형(2), 모형(3)에서도 모형 (1)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기본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음. 모형 (4)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증장년층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여 추정된 계수를 나타냄. 모형 (1)~(3)의 계수는 미이용 청년 대비 제도 이용의 효과를, 모형 (4)의 계수는 제도 이용자 중 증장년 대비 청년에게 추가로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함.

출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나원희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1.

단으로 하여 제도 이용의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모형 (1)은 기본 모형이며, 모형 (2)는 대부업신용대출·현금서비스·학자금대출·햇살론 보유 여부, 수도권 거주, 종사상지위 등의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3)은 2023년에 제도를 신청한 이용자를 제외한 모형이다. 이 연구의 성과지표는 현재 시점과 1년 전 시점의 변화로 측정된다. 실험군 역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반 이내에 제도를 신청

한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2023년 신청자는 조사 시점까지 2년 가까이 경과하여 제도 이용의 효과가 측정 구간 밖에서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의 부채·소득을 회상하여 응답하는 정확도도 낮아진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추정치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강건성 검정으로 모형 (3)을 제시하였다. 모형 (2)와 (3)에서도 모형 (1)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기본 모형의 강건성이 확인된다. 한편 모형 (4)는 비교집단을 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층으로 바꾼 것으로, 그 계수는 제도의 효과가 아니라 제도 이용자 가운데 청년층에게 추가로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금융취약청년에 비해 여러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부채 측면에서는 총대출 감소율이 15.4%, 신용대출 감소율이 38.8% 높았고,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26.6%포인트 낮아졌다. 심리·건강 측면에서는 PHQ-9 우울 점수가 0.78점 더 낮아졌고, 극단적 충동이 감소할 확률이 10.9%포인트, 건강상태가 개선될 확률이 11.4%포인트 높아졌다. 대인관계(15.1%포인트)와 가족관계(8.7%포인트)의 개선 확률도 함께 높아졌다. 반면 신규 취업, 승진, 노동시간, 월소득 증가 등 객관적 고용·소득 지표에서는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노동 의지 개선 확률이 10.6%포인트 높아지는 등 주관적 지표에서만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의 재무적·심리적 회복에는 기여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

용·복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한편 모형 (4)는 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을 비교집단으로 한 결과이다. 신용대출 감소율, 소득 대비 소비 비중 감소, 우울 감소 확률, 대인관계 개선 확률에서는 청년 이용자의 값이 중장년 이용자보다 유의하게 컸으나, 건강상태 개선과 가족관계 개선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모형 (4)에서는 모형 (1)~(3)과 달리 신규 취업(5.1%포인트), 승진(4.8%포인트), 고용개선(9.7%포인트) 등 객관적 고용지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결과의 비교집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형 (1)~(3)의 비교집단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청년이므로 그 계수는 제도의 순효과를 의미하는 반면 모형 (4)의 비교집단은 제도를 이용한 중장년이므로 그 계수는 이미 제도를 이용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령집단 간 격차를 의미한다. 즉 모형 (4)의 고용지표 유의성은 제도가 청년의 취업을 늘렸다는 근거라기보다 노동시장 진입과 이동이 활발한 생애 주기에 있는 청년이 중장년에 비해 취업·승진을 경험할 확률이 구조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실제로 노동의지 개선은 모형 (1)~(3)에서 유의하였으나 모형 (4)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근로의욕의 회복은 연령과 무관하게 제도 이용에 따른 공통 효과임을 시사한다. 다만 청년과 중장년 간 이용 제도의 구성이나 채무·소득 여건의 차이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연령집단별 제도 이용 효과의 차이는 추후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4 채무조정제도의 한계⁵⁾

앞서 정량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성적 효과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취약청년을 현장에서 상담·지원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종사자 FGI를 총 11명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대면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 질문지를 발송하여 주제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각 면접은 약 2시간 소요되었으며, 참석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인터뷰 집단은 채무조정지원제도를 공적·사적으로 구분하여 개인회생을 주로 지원하는 종사자(집단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담당하는 종사자(집단 2), 두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지원 종사자(집단 3), 공·사 제도의 공통 한계인 통합적 재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집단 4·5)로 구성하였다.

가. 개인회생제도의 한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관점에서 발견되는 한계는 변제 요건의 불합리함, 완제가 힘든 구조, 초기 진입장벽과 행정편의주의, 지역 간 실무준칙 적용의 차이, 불건전한 대리인 시장의 확대 등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청년의 개인회생 인가 과정에서 변제율이 중요한

요소인데, 변제금액이 채무액과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어 연체 일수나 채무 가중도를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서울회생법원, 2025a. p. 2).

둘째,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지만, 청년 입장에서 완제까지는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 변호사, 법무사가 완제가 아니라 개시 통과 여부를 성과로 삼아 이를 중심으로 홍보하면서 소득상환 계획이 무리하게 설정되는 경우는 높은 변제율로 이어져 오히려 청년의 완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청년기 특성상 소득이 갑자기 중단, 감소해도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장치가 없어 완제를 앞두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거나 변제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초기 진입장벽이 높다. 준비·제출 서류가 매우 많고 인가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소요된다. 최근 회생 신청이 급증했으나 법원별 회생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인가 기간이 더 길어지고, 매월 변제가 전제되므로 안정적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어 일용직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청년은 접근이 어렵다. 넷째, 지방법원 간 실무준칙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변제기간 단축,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주거비·생계비 인정 기준, 특별면책 적용,

5) 현장 종사자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의 진술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한계는 면접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사례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금지명령 여부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있고, 같은 법원 안에서도 회생위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 처리 법원에 따라 청년이 갚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면서 주소를 이전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수임료 부담이 크고(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정직한 대리인을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도 확인된다.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에서는 채무감면 기능의 미흡, 장기간 소요, 변제 중 재대출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첫째, 연체 이자는 감면되지만 실질적인 채무감면 기능은 낮다. 협약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감면할 수 있고, 그마저도 총채무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동의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둘째, 채무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애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청년이 긴 상환기간을 견디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빠른 재기를 가로막아 미래 계획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이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고 이용하도록 이끄는 주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변제 중인 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을 유도하여 재부채로 이

어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 채무조정제도 전반의 문제와 한계

첫째, 제도 이용 전·중·후의 개입이 충분하지 않다. 제도를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의 상황과 부채 속성을 고려할 때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종합상담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모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기 해당 기관이 속한 제도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변제 과정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나 상담창구도 없고, 완제 이후 청년이 다시 채무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 역시 미흡하다.

둘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정서, 고용, 주거, 식사 등 복합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연계는 상담 과정에서 고용·복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수준에 머문다. 기관마다 업무와 정보가 나뉘어 있어 청년이 실제로 해당 기관을 찾아갔는지, 신청은 하였는지, 지원을 받았는지가 채무조정 기관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계 이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없다. 청년이 중도에 이탈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다. 사후관리 역시 같은 이유로 작동하기 어렵다. 변제 과정에서 청년의 소득이 끊기거나 취업

이 무산되어도 이를 감지할 경로가 없어 문제는 연체가 다시 발생하거나 청년이 스스로 다시 찾아왔을 때에야 드러난다.

5 나가며

청년의 부채는 생애이행기의 자금 수요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규모보다 저신용·다중채무·중기연체가 중첩된 특징이 있다. 채무조정 제도는 청년의 부채 감소와 심리적 회복,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접근성 부족과 복잡한 절차, 지역 간 편차, 사후관리의 미흡 등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청년 부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사후적 채무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괄하는 사회투자적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제시한 채무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나, 이 글에서는 현시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청년의 재기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는 제도 진입 이전 단계의 재정비를 의미한다. 청년이 채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조정제도에 진입하기 전에 청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사정(assessment)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회생법원·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가 각기 소관 제도를 중심으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진입 이전

단계에서 이를 아우르는 종합상담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사정의 범위를 채무조정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장하여 소득·재산·채무 정보뿐 아니라 채무 발생 원인, 정신건강, 청년이 보유한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의 위기도 조사표와 같이 복합적 영역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 도구의 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5, p. 190).

둘째, 이미 제도에 진입한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계가 소개에 그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청년을 고용·복지 사업으로 연계하였을 때 신청 여부와 진행 상황이 채무조정 기관으로 회신되어야 중도 이탈을 확인하고 다시 개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에 포함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합데이터를 관리할 주무 부처·기관을 지정할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변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했을 때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청년은 완제를 앞두고 대부업체 대출로 변제금을 메우거나 제도를 이탈하게 된다.

아울러 성과지표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청년 채무조정사업의 성과지표는 ‘채무조정 지원자 수’라는 산출지표에 머물러 있어 제도가 청년의 재기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회

투자적 관점에서 제도를 평가하려면 지원 규모가 아니라 지원 이후의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 확인된 신용평점과 부채의 회복과 같은 결과지표, 그리고 완제율, 완제 이후 채무조정제도 재진입율처럼 제도의 지속 효과를 보여 주는 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채무조정제도를 사후적 부채 처리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때, 채무조정 제도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박윤경, 하은솔, 오욱찬, 신영규. (2022).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데이터처. (2026. 2. 11.). **2026년 1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https://mods.go.kr>

김성아, 김문길, 나원희, 한영섭, 강예은. (2023a).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이정민, 강예은, 장성현. (2023b).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태완, 한수진. (202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수시) 2023-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원희, 오윤해, 노혜진, 박진백, 황안나. (2025).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5-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5). 2025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서울회생법원. (2025a).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 (2025b). **2024년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신용회복위원회. (n.d.). **채무조정제도 비교**.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90

정세정, 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욱찬, 이아영, 이해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2025-07).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신용평가데이터. (n.d.). **KoDATA 홍보관**. <http://www.kodata.co.kr/cr/CRPRS03R0.do>

Current Status of Youth Debt and Policy Tasks for Debt Adjustment Programs in Korea

Na, Won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indebtedness among young adults aged 19–34 and discusse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debt adjustment system. Youth indebtedness results from the combined financial demand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cluding student loans, housing costs, and living expenses. It is characterized less by the overall amount of debt than by structural vulnerabilities such as low creditworthiness, multiple outstanding debts, and medium-term delinquency. Delinquency rates are rising more rapidly among young adults than among any other age group. Debt problems are becoming increasingly persistent for young people as their entry into the labor market is delayed and, consequently, the attainment of stable income is postponed. Compared to non-users, those who reported using a debt adjustment program saw significant improvements in debt reduction, the management of depressive symptom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lthough no improvements were found in objective employment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new labor-market entrants or income. In practice, the effectiveness of the debt adjustment system is found to be constrained by high entry barriers, complex procedures, regional disparities in implementation, and a lack of follow-up manag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improving the debt adjustment system require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counseling system to assist individuals before they enter the system, strengthening follow-up management, and revising performance indicators.